

## 건설기술 진흥법

### <목 차>

#### 1.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소관부처 및<br>작성자 인적사항 | 소관부처        | 국토교통부 | 작<br>성<br>자 | 이름  | 김태형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서<br>(과) | 건설안전과 |             | 직급  | 전산사무관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국장          | 김태병   |             | 연락처 | 044-201-4172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과장          | 박동주   |             | 이메일 | thkim0528@korea.kr |

2025. 1. 20. 작성

정책책임자직위 기술안전정책관

성명 김 태 병



## < 규제 개요 >

| 기본<br>정보     | 1.규제사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2.규제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의2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3.위임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4.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.1.27.~2025.3.7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규제의<br>필요성   | 6.추진배경<br>및 정부개입<br>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<br>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필요<br>* '19.5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<br>공개해 왔으나, 법적근거 부재로 '23년 4분기부터 공개 보류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7.규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<br>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<br>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건설사업자명, 공사명 및<br>사망자 수 등을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8.피규제집단<br>및 이해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건설사업자</td><td>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</td></tr><tr><td>이해관계자</td><td>공공 건설공사 발주청</td><td>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</td></tr></table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유 형 |  | 인원수 또는 규모 | 피규제자 | 건설사업자 |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| 이해관계자 |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|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|
|              | 유 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원수 또는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피규제자         | 건설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이해관계자        |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9.규제목표       | ○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, 건설공사 중 사망<br>사고 예방을 통한 근로자 및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규제의<br>적정성   | 10.영향평가<br>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쟁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기영향평가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11.비용편익<br>분석<br>(정성분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건설사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여, 근로자<br>및 국민의 사망사고 발생 예방 등 편익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  | 12.규제일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몰설정<br>예외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<br>하는 규제    | 미해당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· 안전과 직접<br>관련된 규제 | 해당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<br>성격의 규제     | 미해당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경제규제<br>여부기준 | 4.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5.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                  | 미해당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몰설정<br>세부기준 | 6.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               | 미해당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7.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<br>검토가 필요한 규제 | 미해당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몰설정여부       | 일몰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장여부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설정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몰유형         | 일몰설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몰주기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| 13. 우선허용·<br>사후 규제<br>적용여부 | 해당없음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# 〈조문 대비표〉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제67조의2(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공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,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|

# 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매년 건설사고로 인해 200명 이상이 사망\*하는 상황에서 건설사고 경감을 위해 전체 사망사고의 약 25%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

\* 사망자수 : 251명('20) → 271명('21) → 238명('22) → 244명('23) → 204명('24)  
100대기업 사망자수 : 44명('20) → 67명('21) → 54명('22) → 60명('23) → 52명('24)

- 국토부는 매년 23,000여 곳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,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등 건설 사망사고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
- 건설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 등은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, 해당현장에서만 불운하게 발생한 것으로 안일하게 인식하고, 안전보다 경제성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현실
- 이에,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사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('19.5~)해 왔으나,
- 법적근거 미비 지적에 따라 '23년 4분기부터 공개를 중단한 상황으로,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책임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\*되는 만큼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단공개 재개 필요

\* 슬그머니 사라진 국토부 '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' 발표(연합뉴스, '24.3.31)

\*\* '사망사고 건설사 발표'가 망신주기라고? 국토부, 슬그머니 폐지(한겨레, '24.4.1)

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(대안 내용) ①건설사 자율적 안전확보 노력, ②법적근거 없이 건설사 협조를 통한 명단공개, ③법적근거 마련 후 명단공개

- (선택 근거) 건설사의 자율적 노력에 맡기기에는 건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, 명단공개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

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| 이해관계자명   | 일시 · 장소 · 방법                  | 제시의견 | 조치결과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건설사      | 입법예고·관계기관 의견조회를<br>통해 의견수렴 예정 |      |      |
| 근로자 등 국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
## 3. 규제목표

-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의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써, 대형 건설사가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

## II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안전확보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적절한, 필요 최소한의 방안으로, 이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불명예 등 부담에 비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 등 공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| 영향평가 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------|
| 기술   | 경쟁   | 중기  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#### ○ 영향평가

##### 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사항 없음

##### - 경쟁영향평가

해당사항 없음

|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              | 해당 여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(A)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      | 해당없음  |
| (B)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         | 해당없음  |
| (C)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         | 해당없음  |
| (D)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| 해당없음  |

##### - 중기영향평가

해당사항 없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|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① 규제 영역    | 해당사항 없음 |
| ② 규제 방식    | 해당사항 없음 |
| ③ 예비분석모델   | 해당사항 없음 |
| 판단 근거      | 해당사항 없음 |
| ④ 대상 업종    | 해당사항 없음 |
| ⑤ 예비분석내용   | 해당사항 없음 |
| ⑥ 차등화적용 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

○ 기타 고려사항

- 고용친화적 규제설계

해당사항 없음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사항 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해당사항 없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
| 분류              | 적용여부 | 적용내용/미적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포괄적<br>개념<br>정의 |      |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 불가 |
| 유연한<br>분류<br>체계 |      |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 불가  |
| 네거티브<br>리스트     |      |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부적절 |
| 사후<br>평가관리      |      |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 적용 부적절  |
| 규제<br>샌드박스      |      |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부적절  |

#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#### ○ 해외사례

- (미국) OSHA(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) 직업 안전보건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, 이를 바탕으로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, 사고 유형, 원인, 업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,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 중
- (영국) HSE(Health and Safety Executive) 보건안전행정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,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, 결과는 공개 보고서로 발간되어 안전 개선에 활용
- (일본) 후생노동성(厚生労働省)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 발표 하며, 사고 유형별, 업종별 통계를 제공하고,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
- (공개 정보의 종류)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, ② 사고유형, ③ 사상자 수, ④ 사고원인, ⑤ 관련 업체정보, ⑥ 안전조치 미흡 여부, ⑦ 행정 처분내용 등

#### ○ 타법사례

- (산업안전보건법)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로 연간 2명 이상 사망 사업장, 사망만인율이 동일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,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보,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
- (건설산업기본법)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, 나이, 상호, 주소, 처분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을 관보, 인터넷 또는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(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(이하 “산업재해발생건수등”이라 한다)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(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0조(공표대상 사업장)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
1.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재해자”라 한다)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2. 사망만인율(死亡萬人率: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)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
3.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
4.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
5.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(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.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(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(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,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)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, 건설기계 대여대금,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(이하 “상습체불건설사업자”라 한다)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, 실종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,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2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)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·나이·상호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·나이·주소 및 법인의 명칭·주소를 말한다)
2.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

#### 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: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대상의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편익분석 불필요

| 분석기준년도                   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<br>(년) | 할인율(%)                   | 단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규제대안 :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영향집단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비용            | 편익                       | 순비용 |
| 피규제 기업<br>· 소상공인          | 직접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간접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피규제 일반국민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사망사고 발생 저감에<br>따른 사회적 편익 |    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<br>· 소상공인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사망사고 발생 저감에<br>따른 사회적 편익 |    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<br>국민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사망사고 발생 저감에<br>따른 사회적 편익 |     |
| 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총 합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기업순비용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연간균등순비용                  |     |

### Ⅲ. 규제의 실효성

#### 1. 규제의 순응도

##### 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4제2항제8호 등에 따라, 이미 건설사고 사실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규제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

##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##### 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분기별로 사망사고 발생 시평 상위 100대 건설사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에서 추출이 가능한 정보이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

##### 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현재 사고정보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구축·운영을 통해 관리 중으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집행 가능함

## 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 1. 추진 경과

-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사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('19.5~)
- 법적근거 미비 지적에 따라 '23년 4분기부터 공개를 중단
- 건설사 명단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('24.4~5)을 거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추진

### 2. 향후 평가계획

-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지속 검토·보완

### 3. 종합결론

-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, 경제성 보다 안전 우선으로 건설사의 인식을 전환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이에 연간 전체 사망자의 25%를 차지하는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적절한 규제로 도입이 타당